

붙임 1

2011년도 장애인복지관 이용료 산정기준 권장(안)

1. 기본 개요

1-1. 목적

-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재활서비스 유형 중 일부 서비스에 대해 각 복지관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바,
- 이용료 수입확보의 근거를 검토하고,
- 적정 이용료 수준을 제시하여 각 장애인복지관 사업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2.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료 수입 현황

-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도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의뢰한 『전국 장애인복지관 적정이용료 책정기준 개발』 연구 결과에 따르면,
- 지역분포를 감안한 36개 복지관의 2009년 복지관 예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 이용료 수입이 개별 복지관 연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평균 16.4% 수준임.
- 사업수입의 내역별로 살펴보면, 직업재활사업이 9.0%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재활사업 7.0%, 사회심리재활사업과 진단판정사업 2.0% 순으로 나타났음. 바우처 20%, 기타 31%였음.

1-3. 장애인복지관 이용료 수입과 관련한 문제점

- 2004년에 『장애인복지관 이용료 징수액 산정기준 권고안(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을 제시한 이후 지속적인 물가상승을 포함한 사회복지환경 변화를 반영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 또한 2005년 국고보조금 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각 지역별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료 책정기준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아 2004년 제시된 『장애인복지관 이용료 징수액 산정기준 권고안(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을 참고하거나 타 지자체의 사례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로 인해 각 지자체 및 장애인복지관별 이용료 부과 수준 책정에 애로점이 발생하고,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여지가 많았음.

1-4. 이용료 확보의 법적근거 및 당위성

-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로 지방비보조금 외에 자체수입으로 이용료를 추가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정한 ‘이용료 징수액 산정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
-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정부보조금이 전체 운영예산 중 대략 평균 54.8%에 불과하여, 복지관 운영의 원활성 및 양질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수입원을 확보해야 함¹⁾.

1) 이번 연구에서는 프로젝트성 혹은 일회성 성격의 정부보조금은 제외하였기 때문에 2004년의 78.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음.

1-5. 기본원칙

- 본 산정기준은 강제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며, 각 복지관은 이용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부담의 원칙으로 이용료 부과토록 함.
 - 본 권장고시에도 불구하고, 이용장애인의 경제적 여건 및 복지관의 특성에 따라 무료, 감면 또는 최소이하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 장애인복지관 사업 중 기초재활서비스 영역의 공통사항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한해 제한적으로 권고함.
 - 명시하지 않은 사업의 이용료는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서비스 가중치(난이도, 전문성, 업무비중), 서비스 제공 단위시간 등 5가지 요인을 반영하여 적정이용료를 설정하고, 기관별 현재 징수되고 있는 이용료 기준(이용장애인의 경제능력, 지역, 전문가 경력, 기관방침, 적용시점)과 표준편차를 감안하여 권고이용료를 기준으로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으로 범위를 정하며, 징수액 범위는 전체 복지관 평균 대비 $\pm 20\%$ 선으로 설정함.
- 향후 2년 단위로 이용료 징수액 산정기준을 제시하되 변동율은 물가상승율, 정부 부담금 인상을 등 정부기관의 종합적인 통계치를 근거로 산정(매년 12월 중 권고 고시)
- 본 이용료 징수액 권고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결과자료를 토대로 공청회, 협회제도분과개선분과위원회, 이사회 검토와 의결절차를 거쳐 결정함

2. 장애인복지관 사업영역별 업무분류

영역	사업(대분류)	세부사업(중분류)	세부사업내용(소분류)
기초 재활 서비스	1. 진단판정	1) 접수상담	초기접수, 접수면접/접수상담, 재접수/재진
		2) 진단	사회, 심리, 의료, 교육, 언어, 청력, 직업, 음악, 특수체육진단
		3) 판정	판정회의, 판정후조치
	2. 의료재활 사업	1) 진료	진료 및 처방, 투약 및 응급처치, 건강관리, 의뢰
		2) 재활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운동통증치료, 전기치료
		3) 수중재활	운동처방, 수중운동치료
	3. 교육재활 사업	1) 조기교육	조기교육, 통합교육 및 지원
		2) 학습지도	기능적학습지도, 지역사회적응, 검정고시교육
		3) 교재/교구 제작 및 대여	교재/교구대여, 교재/교구 개발 및 제작 의뢰, 교재/교구 제작
	4. 직업재활 사업	4) 장애인사회교육	정보화교육, 성교육, 수화교육(기타)
		1) 직업상담 및 평가	구직등록(직업상담), 직업진단(평가), 의뢰
		2) 직업훈련	직업적응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전훈련, 현장훈련
	5. 사회심리 재활사업	3)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취업알선, 일반고용, 지원고용, 재택고용, 자영업, 보호고용
		1) 재활상담	재활상담
		2) 심리상담	심리상담
	6. 스포츠 여가활동	3) 심리치료	놀이, 음악, 미술, 심리, 운동, 행동, 감각통합, 인지치료
		4) 사회적응훈련	재활캠프, 계절학교, 특별활동, 일상생활훈련, 방과후활동
		1) 스포츠	체육교실, 장애인체육대회
재가 복지	1. 개별지원	2) 여가	취미/여가/오락 프로그램
		1) 상담	상담/진단/평가
		2) 일반서비스	생활지원, 교육/문화지원
		3) 전문서비스	의료및보건
	2. 사례관리	4) 협력서비스	
		1) 사례관리	상담, 사정, 계획, 진행, 평가, 의뢰, 사례관리
		1) 수화관련사업	수화교육, 수화자막 및 비디오 제작, 수화통역
		2) 시각장애관련사업	교육, 점자도서관, 점역출판, ARS/BBS
기타 사업	1. 기타사업	3) 재활정보지제공	정보지제공, 통신정보제공
		4) 장애인용품무료점검	
		5) 장애인결혼사업	
		6) 여성장애인사업	
		7) 시설대여 및 보장구대여	시설, 보장구대여
		8) 사회교육	
사회 서비스 바우처	1. 사회서비 스바우처	1) 활동보조	
		2) 장애아동 재활치료	
		3) 지역사회혁신사업	
별도 영역	1. 별도사업	1) 주간보호센터	
		2) 단기보호시설	
		3) 공동생활가정	
		4) 장애인체육관	
		5) 정보화교육	

3. 이용료 산정절차 및 방법

3.1. 연구과정 및 권고절차

- 1-2단계: 이용료 징수기준 : 이용료 징수기준 연구예산확보 및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용역, 이용료 산정 연구작업 수행
- 3단계: 이용료 징수기준 1차 연구결과 및 간담회, 최종 연구보고
- 4단계: 이용료 징수기준 최종 결과보고 설명 및 협회 제도개선위원회 연구 결과 검토, 권고범위 및 내용 검토를 통한 권고안 결정 및 상정
- 5단계: 권고안 검토(보건복지부, 이사회) 및 최종 시행의결(이사회)

단계	주요 절차 및 내용	진행방법	
		진행내용	자문 및 검토 의결
1단계	선행연구검토 ▽ 국내외 사례 분석	문헌 고찰을 통한 원가 분석 모형 설계	전체 연구방향 및 서비스 원가 분석 모델에 대한 실무자 대상 자문
	자료수집 및 기관별 분석 ▽ 장애인복지관 수입/지출 현황, 이용료 징수 실태 분석,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원가 분석	· 장애인복지관 세입세출 및 서비스 제공실적 분석 · 각 사업별 가중치 분석 · 사업수입명세서 및 이용료 부과 현황 분석 · 기관별 서비스 원가 분석	· 수입/지출 현황 및 서비 스 제공실적 · 각 사업별 가중치 · 이용료 징수 현황에 대 한 실무자 대상 자문
3단계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적정이용료 책정 기준 개발 ▽ 연구최종 보고 및 1차 검토	서비스 조정원가 산출 & 적정이용료 산출	원가분석결과 및 적정이용료에 대한 의견 수렴
4단계	2차 검토 및 권고안 마련 ▽ 이사회 권고안 검토 및 의결	이용료 권장원가 연구과정 설명 ▽ 권고범위 및 방법 검토 및 결정	제도개선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시행 권고 ▽ 전국 장애인복지관	권고안 최종검토 및 시행의결	보건복지부 이사회
5단계			시도 및 시·군·구

[그림 1]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이용료 산정 과정 및 절차

3.2. 이용료 원가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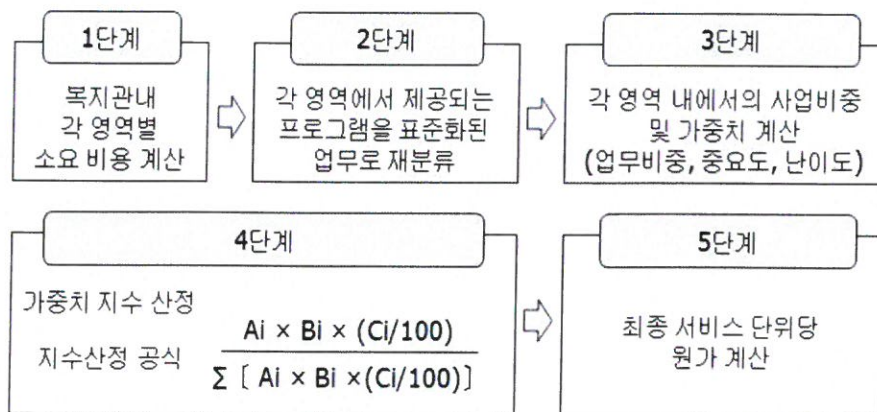
○ 분석방법 : 활동기준원가계산

-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을 감안하여 간접비가 배부되는 과정에서 원가의 왜곡을 최소화하고자 함

○ 원가 계산 및 적정이용료 산출시 반영요인

원가반영요인	적정이용료 반영 요인
- 서비스 가중치 (난이도, 전문성, 업무비중) - 서비스 제공 단위시간	- 자부담비율(1-정부보조금) :25.9% - 건강보험 유사서비스 수가 - 현행 이용료 부과수준

○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이용료 원가분석과정(5단계)



○ 참조자료: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 「전국 장애인복지관 재활서비스 적정이용료 책정기준 개발」 연구결과보고서 참조

4. 서비스별 이용료 징수 권고기준

4.1 진단판정사업

서비스 분류				권장 이용료(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준 시간(분)	최소 (-20%)	기준액 (권장가)	최대 (20%)
1.진단판정	1-1.접수상담	1-1-1. 접수면접/상담	30	2,900	3,680	4,400
		1-1-2. 재접수/재진	20	3,200	4,000	4,800
	1-2.진단	1-2-1. 사회진단(평가)	20	4,300	5,330	6,400
		1-2-2. 심리진단(평가)	30	10,200	12,810	15,400
		1-2-3. 의료진단(평가)	60	9,100	11,390	13,700
		1-2-4. 교육진단(평가)	60	7,700	9,640	11,600
		1-2-5. 언어진단(평가)	60	4,900	6,180	7,400
		1-2-6. 직업진단(평가)	60	3,300	4,150	5,000

※ 심리·언어·교육·직업진단의 경우 다양한 진단도구를 사용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본 권고
가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에서 사용되는 진단도구에 따라 권장이용료는 달리 적용할 수 있
음.

4.2 의료재활사업

서비스 분류				권장 이용료(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준 시간(분)	최소 (-20%)	기준액 (권장가)	최대 (20%)
2. 의료재활	2-1. 치료	2-1-1. 물리치료	30	5,600	6,990	8,400
		2-1-2. 작업치료	30	6,000	7,560	9,100
		2-1-3. 언어치료	30	6,600	8,230	9,900
		2-1-4. 감각통합치료	40	5,800	7,200	8,600
		2-1-5. 운동통증치료	40	5,100	6,320	7,600
	2-2. 수증재활	2-2-1. 수증운동치료	60	9,800	12,310	14,800

4.3 교육재활사업

서비스 분류				권장 이용료(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준 시간(분)	최소 (-20%)	기준액 (권장가)	최대 (20%)
3. 교육재활	3-1. 조기교육	3-1-1. 조기교육	30	3,400	4,210	5,100
		3-1-2. 통합교육 및 지원	180	14,000	17,550	21,100
	3-2. 학습지도	3-2-1. 기능적학습지도	30	1,100	1,330	1,600
		3-3. 장애인사회교육	60	600	750	900
		3-3-1. 정보화교육	60	600	750	900

4.4. 직업재활사업

서비스 분류				권장 이용료(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준 시간(분)	최소 (-20%)	기준액 (권장가)	최대 (20%)
4. 직업재활	4-1. 직업상담 및 평가	4-1-1. 직업진단(평가)	120	13,500	16,830	20,200
		4-2-1. 직업공과훈련	300	2,900	3,600	4,300
	4.2. 직업훈련	4-2-2. 직업적응훈련	300	4,900	6,080	7,300
		4-2-3. 전환훈련(교육)	60	5,100	6,380	7,700
		4-2-4. 현장훈련	120	500	650	800
		4-2-5. 지원고용	120	8,200	10,290	12,300

4.5 사회심리재활사업

서비스 분류				권장 이용료(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준 시간(분)	최소 (-20%)	기준액 (권장가)	최대 (20%)
5. 사회심리 재활	5-1. 심리치료	5-1-1. 놀이치료	90	16,600	20,730	24,900
		5-1-2. 음악치료	90	14,900	18,660	22,400
		5-1-3. 미술치료	90	10,400	13,050	15,700
		5-1-4. 심리치료	40	6,500	8,150	9,800
		5-1-5. 운동치료	40	11,000	13,720	16,500
		5-1-6. 행동치료	60	9,000	11,270	13,500
		5-1-7. 인지치료	50	7,300	9,100	10,900
	5-2. 사회적응훈련	5-2-1. 재활캠프	2일	15,400	19,190	23,000
		5-2-2. 계절학교	1일	8,300	10,420	12,500
		5-2-3. 특별활동	180	12,900	16,170	19,400
		5-2-4. 일상생활훈련	120	6,800	8,450	10,100
		5-2-5. 방과후활동	60	2,900	3,590	4,300

4-6. 스포츠여가사업

서비스 분류				권장 이용료(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준 시간(분)	최소 (-20%)	기준액 (권장가)	최대 (20%)
6. 스포츠 여가	6-1. 스포츠	6-1-1. 체육교실	60	8,200	10,240	12,300
	6-2. 여가	6-2-1. 취미/여가/오락 프로그램	60	2,700	3,370	4,000

4-7. 재가복지사업

서비스 분류				권장 이용료(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준 시간(분)	최소 (-20%)	기준액 (권장가)	최대 (20%)
7. 재가복지	전문서비스	의료 및 보건		4,700	5,840	7,000

[별첨]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원가분석 및 권장이용료 제시

- 장애인복지관의 적정 이용료 기준을 산정하기 위해 먼저 36개 복지관의 2009년 세입세출 결산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분석하여 서비스 기초원가를 산출하였음. 이 기초원가는 서비스 제공시간이 제각기 다른 상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로 비교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따라서 기초원가를 토대로 각 복지관별로 서비스가 제공된 시간을 고려하여 조정원가를 도출하였음.
- 서비스별 기초원가를 토대로 적정 이용료 산정시 장애인복지관은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하였음. 즉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복지관의 자부담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용료로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고, 조정원가 평균값에 36개 복지관의 자부담 비율 평균(25.9%)을 곱한 값으로 적정 이용료를 산정하였음. 여기서 자부담 비율은 통상적인 장애인복지관의 수입 중 기대되는 이용료 수입으로서 공식으로는 아래와 같음:
$$[1 - (\text{정부경상보조금} + \text{후원금} + \text{전입금} + \text{이월금} + \text{잡수입}) / \text{총세입}] * 100]$$
- 최종 권장 이용료를 제시하기 위해, 서비스별 단위원가 산정시 ① 서비스 가중치(난이도, 전문성, 업무비중), ② 서비스 제공 단위시간 등을 반영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권장이용료 산정을 위해 ① 자부담 비율, ② 건강보험 유사서비스 수가, ③ 현행 이용료 부과 수준 등을 반영하였음.
- 아래 표는 장애인복지관 업무표준화에 따른 사업분류를 바탕으로 본 연구팀에서 계산한 서비스별 단위 조정원가, 적정이용료, 현재 복지관에서 부과하고 있는 이용료 금액, 그리고 2004년도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권장 이용료 금액을 제시한 것임.

<진단판정사업>

대 분 류	중분류	소분류	기준 시간	단위당 서비스 조정원가 평균	적정 이용료*	현행 부과 이용료**	2004년도 권장 이용료	2011년도 권장 이용료***
진단 판정	접수상담	접수면접/접수상담	30분	39,322	10,184	2,833	5,171	3,680
		재접수/재진	20분	16,122	4,176	4,000	-	4,000
	진단	사회진단	20분	77,303	20,021	4,100	12,588	5,330
		심리진단	30분	161,316	41,781	9,855	23,130	12,810
		의료진단	60분	153,923	39,866	8,764	26,068	11,390
		교육진단	60분	157,605	40,820	7,420	37,606	9,640
		언어진단	60분	42,699	11,059	4,752	22,657	6,180
		직업진단	60분	242,782	62,880	3,193	22,063	4,150

* 적정이용료는 단위당 서비스 조정원가 중위값에 자부담 비율(25.9%)을 곱한 값임. 자부담비율은 분석대상 기관들의 $[1 - (\text{정부경상보조금} + \text{후원등} + \text{전입금} + \text{이월금} + \text{잠수입}) / \text{총세입}] \times 100$ 값임.

** 현행부과이용료는 분석대상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료 징수 현황 자료의 평균값(시간 및 횟수 등 기준 단위 조정한 값)

*** 2011년도 권장 이용료는 1) 적정이용료를 현행 이용료와 비교하여 $\pm 10\%$ 범주내에 있는 경우 현행 이용료를 따르고, 2) 적정이용료가 현행 이용료보다 10% 이상 적은 경우 적정이용료를 따르며, 3) 적정이용료가 현행 이용료에 비해 10% 이상 많은 경우, 적정이용료를 따르되, 그 상한선을 현행 이용료의 최대 30%로 제한하여 책정되었음.

<의료재활사업>

대 분 류	중분류	소분류	기준 시간 (분)	단위당 서비스 조정원가 평균	적정 이용료*	현행 부과 이용료**	2004년도 권장이용 료	2011년도 권장이용 료***
의료 재활	재활치료	물리치료	30	41,469	10,741	5,380	5,932	6,990
		작업치료	30	31,688	8,207	7,556	6,808	7,560
		언어치료	30	29,740	7,703	8,232	5,268	8,230
		감각통합치료	40	27,805	7,201	9,952	-	7,200
		운동통증치료	40	24,397	6,319	5,150	-	6,320
	수중재활	수중운동치료	60	47,543	12,314	16,754	5,716	12,310

* 적정이용료는 단위당 서비스 조정원가 중위값에 자부담 비율(25.9%)을 곱한 값임. 자부담비율은 분석대상 기관들의 $[1 - (\text{정부경상보조금} + \text{후원등} + \text{전입금} + \text{이월금} + \text{잠수입}) / \text{총세입}] \times 100$ 값임.

** 현행부과이용료는 분석대상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료 징수 현황 자료의 중위값(시간 및 횟수 등 기준 단위 조정한 값)

*** 2011년도 권장 이용료는 1) 적정이용료를 현행 이용료와 비교하여 $\pm 10\%$ 범주내에 있는 경우 현행 이용료를 따르고, 2) 적정이용료가 현행 이용료보다 10% 이상 적은 경우 적정이용료를 따르며, 3) 적정이용료가 현행 이용료에 비해 10% 이상 많은 경우, 적정이용료를 따르되, 그 상한선을 현행 이용료의 최대 30%로 제한하여 책정되었음.

<교육재활사업>

대 분 류	중분류	소분류	기준 시간 (분)	단위당 서비스 조정원 가 평균	적정 이용료 *	현행 부과 이용료**	2004년도 권장이용 료	2011년도 권장이용 료***
교육 재활	조기교육	조기교육	30	19,233	4,981	3,239	3,264	4,210
		통합교육 및 지원	180	67,752	17,548	26,107	10,809	17,550
	학습지도	기능적학습지도	30	5,150	1,334	11,406	3,152	1,330
	장애인사회교육	정보화교육	60	2,885	747	2,556	2,142	750 ¹⁾

* 적정이용료는 단위당 서비스 조정원가 중위값에 자부담 비율(25.9%)을 곱한 값임. 자부담비율은 분석대상 기관들의 $[1 - (\text{정부경상보조금} + \text{후원금} + \text{전입금} + \text{이월금} + \text{잠수입}) / \text{총세입}] \times 100$ 값임.

** 현행부과이용료는 분석대상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료 징수 현황 자료의 중위값(시간 및 횟수 등 기준 단위 조정한 값임)

*** 2011년도 권장 이용료는 1) 적정이용료를 현행 이용료와 비교하여 $\pm 10\%$ 범주내에 있는 경우 현행 이용료를 따르고, 2) 적정이용료가 현행 이용료보다 10% 이상 적은 경우 적정이용료를 따르며, 3) 적정이용료가 현행 이용료에 비해 10% 이상 많은 경우, 적정이용료를 따르되, 그 상한선을 현행 이용료의 최대 30%로 제한하여 책정되었음.

1) 정보화교육과 같은 시설이나 장비를 이용하는 사업의 경우 고정원가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소 추정된 경향이 있음.

<직업재활사업>

대 분 류	중분류	소분류	기준 시간 (분)	단위당 서비스 조정원가 평균	적정 이용료*	현행 부과 이용료**	2004년도 권장이용 료	2011년도 권장이용 료***
	직업상담 및 평가	직업진단(평가)	120	477,883	123,772	12,942	57,984	16,830
직업 재활	직업훈련	직업공과훈련	300 ¹⁾	13,901	3,600	7,910	-	3,600
		직업적응훈련	300	61,565	15,945	4,673	2,953	6,080
		전환훈련(교육)	60	89,832	23,267	4,909	11,153	6,380
		현장훈련	120	20,839	5,397	500	912	650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지원고용	120	68,582	17,763	7,917	31,032	10,290

* 적정이용료는 단위당 서비스 조정원가 중위값에 자부담 비율(25.9%)을 곱한 값임. 자부담비율은 분석대상 기관들의 $[1 - (\text{정부경상보조금} + \text{후원등} + \text{전입금} + \text{이월금} + \text{잠수입}) / \text{총세입}] \times 100$ 값임.

** 현행부과이용료는 분석대상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료 징수 현황 자료의 중위값(시간 및 횟수 등 기준 단위 조정한 값임)

*** 2011년도 권장 이용료는 1) 적정이용료를 현행 이용료와 비교하여 $\pm 10\%$ 범주내에 있는 경우 현행 이용료를 따르고, 2) 적정이용료가 현행 이용료보다 10% 이상 적은 경우 적정이용료를 따르며, 3) 적정이용료가 현행 이용료에 비해 10% 이상 많은 경우, 적정이용료를 따르되, 그 상한선을 현행 이용료의 최대 30%로 제한하여 책정되었음.

1) 대부분 1일 기준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파악되어 직업적응훈련과 동일한 기준시간인 300분으로 본 연구진에서 설정하였음.

<사회심리재활사업>

대 분 류	중분류	소분류	기준 시간	단위당 서비스 조정원가 평균	적정 이용료*	현행 부과 이용료**	2004년도 권장이용료	2011년도 권장이용 료***
사회 심리 재활	심리치료	놀이치료	90분	80,028	20,727	17,387	19,641	20,730
		음악치료	90분	72,047	18,660	21,225	20,133	18,660
		미술치료	90분 ¹⁾	50,400	13,054	20,151	6,910	13,050
		심리치료	40분 ¹⁾	65,368	16,930	6,265	-	8,150
		운동치료	40분 ¹⁾	62,062	16,074	10,556	-	13,720
		행동치료	60분 ¹⁾	544,946	141,141	8,667	-	11,270
		인지치료	50분 ¹⁾	231,901	60,062	7,000	-	9,100
	사회적응훈련	재활캠프	2일	74,102	19,192	55,062	24,032	19,190
		계절학교	1일	40,224	10,418	14,793	19,068	10,420
		특별활동	180분	62,415	16,166	13,454	19,846	16,170
		일상생활훈련	120분	32,871	8,514	6,500	28,728	8,450
		방과후활동	60분	311,702	80,731	2,764	8,464	3,590

* 적정이용료는 단위당 서비스 조정원가 중위값에 자부담 비율(25.9%)을 곱한 값임. 자부담비율은 분석대상 기관들의 $[1 - (\text{정부경상보조금} + \text{후원등} + \text{전입금} + \text{이월금} + \text{잠수입}) / \text{총세입}] * 100$ 값임.

** 현행부과이용료는 분석대상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료 징수 현황 자료의 중위값(시간 및 횟수 등 기준 단위 조정한 값)

*** 2011년도 권장 이용료는 1) 적정이용료를 현행 이용료와 비교하여 $\pm 10\%$ 범주내에 있는 경우 현행 이용료를 따르고, 2) 적정이용료가 현행 이용료보다 10% 이상 적은 경우 적정이용료를 따르며, 3) 적정이용료가 현행 이용료에 비해 10% 이상 많은 경우, 적정이용료를 따르되, 그 상한선을 현행 이용료의 최대 30%로 제한하여 책정되었음.

1) 빈도분석을 통해 다빈도 시간을 본 연구진에서 설정함.

<스포츠여가사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준시간(분)	단위당 서비스 조정원가 평균	적정 이용료*	현행 부과 이용료**	2004년도 권장이용료	2011년도 권장이용료***
스포츠 여가	스포츠	체육교실	60 ¹⁾	39,543	10,242	9,364	-	10,240
	여가	취미/여가/오락 프로그램	60 ¹⁾	31,487	8,155	2,595	-	3,370

* 적정이용료는 단위당 서비스 조정원가 중위값에 자부담 비율(25.9%)을 곱한 값임. 자부담비율은 분석대상 기관들의 $[1 - (\text{정부경상보조금} + \text{후원금} + \text{전입금} + \text{이월금} + \text{잡수입}) / \text{총세입}] \times 100$ 값임.

** 현행부과이용료는 분석대상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료 징수 현황 자료의 중위값(시간 및 횟수 등 기준 단위 조정한 값)

*** 2011년도 권장 이용료는 1) 적정이용료를 현행 이용료와 비교하여 $\pm 10\%$ 범주내에 있는 경우 현행 이용료를 따르고, 2) 적정이용료가 현행 이용료보다 10% 이상 적은 경우 적정이용료를 따르며, 3) 적정이용료가 현행 이용료에 비해 10% 이상 많은 경우, 적정이용료를 따르되, 그 상한선을 현행 이용료의 최대 30%로 제한하여 책정되었음.

1) 빈도분석을 통해 다빈도 시간을 본 연구진에서 설정함.